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이대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9
----------	------

발의연월일 : 2020. 9. 25.

발의의원 : 이대곤 의원, 서도원 의원

1. 제안이유

-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달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교육 진흥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책무(안 제3조)
- 다.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4조~제6조)
- 라. 재정지원(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군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